

2020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0년 4월 29일(수요일) 11:00 ~ 12:30

○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2층 대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양규혁, 최백렬, 유희철, 윤영상, 박성수, 홍철운, 이동현, 이인재, 김중기, 송완상, 이민규 위원

○ 불참자 : 조재영, 이문선, 이원석, 고관호 위원

○ 상정안건

- 2019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

간 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김강욱)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2019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안」입니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양규혁)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15명 중 총 11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 중 「2019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19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함.

재무과장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공인회계사 계약한 회계법인에서 재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회계법인 : 재무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함.

(회계사)

위원장 :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양규혁)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상태표를 보면 토지가
약592,263백만원 정도 자산으로 잡혀있네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 저희 땅이 70만평정도로 고창캠퍼스도 있고, 새만금도 있고요. 전체가 다 포함
(박성일)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금액 평가는 공시지가로 하나요?

(양규혁)

재무과장 : 저희가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해마다 공시지가를 발표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박성일) 평가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감정되었을 때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위원장 : 그래도 의외로 많지는 않네요.

(양규혁)

정명회계법인 : 토지 같은 경우에는 취득했을 때는 취득가액으로 있다가 향후에 공시지가 계속

(회계사) 상승을 해서 그 취득가액이 공시지가 상승분하고 너무 괴리가 클 때 30%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30%이상으로 괴리가 발생 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해서 그만큼 수렴해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시지가에 따라 변동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취득가액에서 최근에 취득한 토지는 아무래도 시가가 공시지가 보다는 높기 때문에 최근에 취득한 토지들은 최근취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오래돼서 취득가가 낮아진 토지들은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대비해서는 공시지가가 낮으니깐요. 그런 부분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최근에 취득한 토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양규혁)

재무과장 : 최근에 저희가 취득한 토지는 없습니다. 매각은 조금 있는데 저희가 매각
(박성일) 금액도 저희 대학으로 금액이 편입되는 게 아니라 매각할 때는 전북대학교에서 매각을 하지 못하고 기재부산하에 자산관리공사로 인계를 해서 그쪽에서 매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죠.

(양규혁)

위 원 :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정명회계법인을 감사기관으로 선정 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 저희가 2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입찰하는데 지금 계약금액이 19,500,000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위 원 : 이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회계법인에 맡겨야 되겠다라는 의
(김중기) 사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 그 판단은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회계법인이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부에도 회계법인으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기관에서 해본 실적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원 : 작년하고 올해도 바뀌었나요? 아니면 같은 곳이었나요? 몇 년째 하고 있나요?
(박성수)

재무과장 : 같은 곳이었고 3년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부에서 확인을 해서 교육
(박성일) 기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법인이 필요해서 교육부에서 자문을 받고
해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위 원 : 재정위원회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정명회계법인이 명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김중기) 했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우리는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러면 정명회계법인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를 표시 할 수 있는 것을 제시안해
도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 저희가 보통 계약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이든가에 입찰이든가에 실적을 좀
(박성일) 많이 참고를 합니다. 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예전에 최초로 했을 때 실적이 없는 회계법인하고 계
약을 체결했었는데 감사보고서가 많이 늦게 나와 가지고 법정 기한 내에 제
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
로 교육기관을 해봤던 실적위주를 참고해서 저희가 계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위 원 : 대학 자체에서 적정하게 아니면 지침에 맞게 집행이 되었다는 감사관련 내용들은
(김중기) 여기에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교육부나 감사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었고
(박성일) 요. 저희가 이것을 그대로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에서도 또 별도로 감사 법인
을 지정을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재무결산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합
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데는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든지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현지 실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위 원 : 조금 자잘한 것 같습니다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야기를
(김중기) 하시면서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사실 천재지변이 아니
더라도 집행을 못한 경우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을 해서도 사용이 안 되
거나 했을 경우에 사고이월로 넘겨서 집행을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명시이월을 해서 남는 부분들을 빨리 전용을 해서 다른 예산
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는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만 이·전용을 하
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누가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 이·전용은 어차피 권한이 위임되어서 전용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님 전결로 되어
(박성일) 있고요. 그리고 이월된 것은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률에 따라서 명시
이월 된 것을 이·전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위 원 :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그 해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이·전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
(김중기) 시죠?

재무과장 : 그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것은요. 그 목적이외에는 다른 곳에는 쓸 수 가
(박성일) 없습니다. 못쓰면은 그대로 불용시켜서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위 원 : 아니 근데 금년도 예산도 사실은 이·전용이 안 되는 예산도 있을 거고요.
(김중기)

재무과장 : 그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것은 목적이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박성일) 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요. 전용을 하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된 것만 전용
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원 : 전용을 하는데 전용 하는 예산 과목이라든지 이런 결정을 누가 하시나요?

(김중기)

재무과장 : 그것은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무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승
(박성일) 인을 해줍니다. 재무과에서 저희가 전용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사업
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무적 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
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 원 : 언제가 한번 교실 설비라든가 스마트강의실 각 대학별로 배정을 하면서 회의를
(김중기)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재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던가요?

재무과장 :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결정은 할 수가 없고요. 예산으로 편성을 했을 때 어
(박성일) 디어디부서가 어떻게 지정되었는가 이것은 나올 수가 있는데 스마트강의실을 어
디에 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위 원 : 모든 사용처라든가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할 때, 예산 이·전용도 마찬가지로 사
(김중기) 실 전체적인 재정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안 되어 있다는 것 하고요. 그게 권한이
사무국장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그런 결정을 하고 있다.

재무과장 : 이용은 재정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용은 목간 이동이기 때문
(박성일) 에 그것은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있고 이용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재
정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위 원 : 그 사전 승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김중기)

재무과장 : 이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박성일)

위 원 : 전용에 경우 사후보고를 하지 않나요?

(박성수)

재무과장 : 사후보고는 결산서에 사후보고를 합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박성일)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서 전용하고 그 사후결과를 반드시 결산서에
첨부하여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위 원 : 아까 2천만원이하는 관련 소관부서에서 임의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2천
(이인재) 만원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 저희가 조달청 G2B시스템에 무조건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업체가 몇 군데
(박성일) 가 들어오면 거기서 경쟁을 합니다. 가격 경쟁도 있고 서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2천만원 이상은 모조건
적으로 소액수의견적입찰로 진행됩니다.

위 원 : 그러면 회계법인에 아까처럼 성실성이라든가 일종에 레페테이션이 카운트가 안
(이인재) 되고 가격이나 이런 경쟁력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 가격도 있고 실적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실적을 보고 싶다. 실적 건수를 점수를
(박성일) 줄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2천만원 넘어가는 소액수의견적은 가격으로만 결
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원 : 알겠습니다.

(이인재)

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분 안계십니까?

(양규혁)

위 원 : 추가해서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그 2천만원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김중기)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2천만원치만 해당하는 이야기인건가요?

재무과장 : 2천만원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계약을 할 때 보통 원가계산을 한번 의뢰를

(박성일) 해서 최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요. 저희도 어차피 교육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는 하지 않습니다.

위 원 :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감사기관이 할

(김중기)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원 수준에서 감사를 한다는 게 이 내용들을 보신다는 거죠.

재무과장 :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보통할때는 저희가 가격을 국가계약법에 보면 금액을 결

(박성일) 정할 때는 두 군데서 이상에서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거래실례가격을 작성하든 가 아니면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원가계산 협회에서 나온 금액을 하든지 합니다. 저희가 대부분 보편은 처음에는 거래실례가격형태로 합니다. 두 군데서 견적서를 받아봐서 봤을 때 평균가격이 나오면 그걸로 계약을 합니다.

위 원 : 아니, 선정과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이 결산관

(김중기) 련해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내용을 달아보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감사업체 가 이것을 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승인을 해주는 건데 만약 우리도 일반 다른 업체들의 감사도 해보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항목 하나하나씩 보고 정석표라 든가 보면서 한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다 의뢰해서 감사업체에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수준에서 전체적인 그런 것만 감사를 해라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 2차적으로는 교육부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그 부

(박성일) 분은 이중감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법

(양규혁) 인들이 감사 규칙에 의해서 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원 : 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산보고를 했으면 대학회계는

(홍철운) 어떻게 잘 운영은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재정위원회에서 수준 높게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참고로 우리 감사투입 시간, 인원은 알 수 있나요? 대개 그걸로 금액이 정해지는

(양규혁) 데요.

정명회계법인 : 약 200시간정도입니다.

(회계사)

위원장 : 참고로 그 정도 말하자면 이 투입된 인원 곱하기 시간해가지고 200시간 정도 된

(양규혁) 모양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양규혁)

위원들 : 네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양규혁)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여러분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위원들 : 네

위원장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혁)

위원들 : 전원 찬성

위원장 : 반대 위원이 없고 기권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11표, 반대
(양규혁) 0표, 기권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양규혁)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박성일)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
(양규혁) 기 바랍니다.

위 원 : 외국인학생 유치 인센티브는 먼가요?

(최백렬)

재무과장 : 지금 제가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저번에 주요업무보고때 단과대학에서 건의사항
(박성일) 이 왔는데요. 외국인 학생을 석사, 박사를 받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천만원을 증액해서 실질
적으로 이것은 국제에 편성이 되지만 돈은 단과대학으로 배분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라기보다는 학생지원관리에 편성되는 거고 유학생들
(이동헌) 이 많은 단과대학에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원 : 외국인을 관리하고 유치하는데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이 거기에 대한 인
(최백렬) 센티브가 2천만원이라는 게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기존에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2천만원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늘려서
(박성일)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도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위 원 : 학생처장 유희철입니다. 학교 추경세출예산을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에 여러 가
(유희철) 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학교 기본 교육환경개선이 15억중에 화장실보수 10억 정
도 잡혀있습니다. 이정도 예산으로는 화장실 리모델링이 필요한데는 부족할 것
같고 요청을 하지 않는 화장실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교수
님들 연습장 화장실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고 낙후되어 있고 청소도 신경 써서 제대로

위 원 : 되어 있지 않아서 근로학생이 그 청소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근로학생은 (유희철) 사실 화장실 청소를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시설은 빨리 보수가 될 수 있게 화장실은 가장 기본적인 위생시설이니까 보수를 증액을 좀 더 하시는 게 어떨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좀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 그건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확정이 되면 이 금액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박성일)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 온라인 교수공채시스템 구축이 예산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송완상)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년마다 3천만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오프 (박성일) 라인하다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5천3백만원정도 인데 2년 정도 하면 저희가 그 돈만큼이 회수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돈이 들어가지 않고 이게 사실은 예산절감효과도 있지만은 이 업무 때문에 굉장히 오프라인으로 받다보니까 채용할 때마다 직원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업무경감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저희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위 원 :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대학들이 신입교수들이 신청할 때 직접 와가 (최백렬) 지고 서류들고오고 이게 참 우리는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전북대학교는 아주 낙후된 겁니다.

재무과장 : 사실 그 측면도 있습니다. 좀 이걸 진작부터 도입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우선적 (박성일) 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 원 : 진작했어야 했는데 교수공채시스템 5천만원가지고 충분한가요?  

(이인재)

재무과장 :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거를 다 수용을 했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원 (박성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 원 : 세출예산에 시간강사 국고부족금 14억을 편성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윤영상) 시간강사비가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우리가 1년에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 됩니까?

재무과장 : 저희가 지금 총 한 연간 120억 정도 잡혀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그 정도 수준 (박성일) 이고 거의 저희가 48%정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전업하고 비전업단가가 3배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9만원 하고 3만원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동일노동 동일가치 위반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올해부터는 9만원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상향해서 맞추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일부가 반영 된게 제일 문제가 여기다가 100%를 구성을 못하는게 퇴직금이 지금 변수입니다. 퇴직금이 지방 법원에서는 1차적으로 어떻게 되었나면 이분들이 퇴직금 소송을 걸었는데 주 당 5시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은 주당15시간, 월간60시간인데 지방법원에서 곱하기 3이 맞다. 준비하고 나중에 결과하는 것이 된다해서 지방법원에서 곱하기3을 해서 5시간까지는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인용이 될지 아니면 다 해당이 된다고 하면 14억 가지고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정도 수준을 유추해서 교육부에서도 곱하기3이 맞다
(박성일)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금 틀려질 수
있습니다.

위 원 : 국고에서 기여를 하는게 52%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국고에서 지원하는 건 시간
(윤영상) 강사임명사람에 따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대학 상황에서는 한분한테
많은 시수를 부탁드리는게 더 유리하겠네요?

재무과장 : 지금은 전업·비전업 똑같이 동일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적게 해야 유리합니
(박성일) 다.

위 원 : 강사법시행에 따라서 강사들이 주당 6시간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경
(최백렬) 우에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 원 : 시간강사 120억중에서 교양과목이 얼마 전공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윤영상) 있나요?

재무과장 : 그렇게는 구분을 하지 못하고 시간강사는 그때마다 달라지는 대요. 학사관리
(박성일) 과에서 시간강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숫자가 유동적으로 많이 바
뀌고 지금 현재 작년 결산 기준으로 540명 정도 수준인데 숫자도 조정을 하
게 되면 제가 한번 오후에 교육부 출장갈일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도 한번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분 안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분이
(양규혁)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분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들 : 네

위원장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분 전
(양규혁) 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 위원과 기권위원은 안계십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11표, 반대0표, 기권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안」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
(양규혁) 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부처장: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안」에 대하여
(이상노) 설명함.

위원장 :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양규혁)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되는 건 기존에 3억 정도가 미이행
(양규혁)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규정을 바꿔도 이 규정이 거기에 대해서 적용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부처장: 네 맞습니다.

(이상노)

위 원 : 이인재입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물론 방금 말씀하신 선택영역
(이인재) 이랑 그 다음에 연구비를 받는 경우는 연구비에 미이행인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것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서 거
기서 재제를 한다는 것은 좀 더 어그레시브한 그런 재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
고 실효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서
약서를 쓰는 문제인대요. 그것은 어떻게 서약서를 쓰는 걸로 하게 된 겁니까? 아
니면 그것은 빼기로 한 겁니까? 그니까 이것을 연구결과를 못 내면 급여에서 공
제하는데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최근에 교육부
에서 나온 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장이 내려 보낸 공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획예산부처장: 계획 신청단계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노)

위 원 :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연구비 제도개선 방안을 하게 된
(이인재) 이유가 최근에 교육부 공문인대요. 아까 말씀드린 정책과장님의 공문인데 거
기서 보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이런 내용을 새로 된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켜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안에 아까 말씀드린 서약서를 쓰게 되
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런 공문을 내
려 보내고 거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이런 제도를 소위말해서 개선한다는
것 그것은 일단 대학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인가 싶습니다. 자치권은 잘 아시
겠지만 연구와 연구한 것을 가르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한인대요.
제가 더 알아보니까 이런 서약서를 쓰는 문제는 법리적으로 실효성도 없답
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서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를 하려면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약서를 쓴다는 아
이디어가 마치 우리가 사채를 쓰고 신체포기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것
을 연상시켜서 이게 교수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서 이것은
교수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이것은 굉장한 반대의견이 있었고 따라서 이런
의견들을 어제 공문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부처장: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급여 차감에 대해서 저희가 법리적으로 의의를 했는

(이상노)

데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최대 2분의 1이상 급여 차감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이걸 하려고 하면은 먼저 동의
서가 필요하다고 차감과 연관된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래서 동의서와 2분의 1 차감한도만 지켜진다면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을 받았
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다른 학
교들도 급여공제에 대해서 포함시키고 있고요. 부산대는 이미 포함시켜서 운
영하고 있습니다.

위 원 : 부산대인 경우에는 이런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논 이유가 19년도에 있는 국
(이인재) 회의원의 국정감사였잖아요? 국정감사에서 부산대와 충남대 그 다음에 경북
대가 2억이나 3억 정도에 대한 미 환수 현황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제도 개
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다른 학교들은
미환수 비율이라든가 금액들이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었거든요.

위 원 : 이것은 교연비에 관련된 문제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미 환수액들은 교연비하 (이인재) 고는 상관없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부처장: 이게 교연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연비라고 하면은 교육·연구·학생지도영역 뿐만

(이상노) 아니라 연구선택영역도 교연비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위 원 : 현재 해외 연구교수를 나가는 경우에 교연비에서 환불 나가거든요. 그 의무

(최백렬) 를 불이행했을 때 환수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받았던 것을 연구보고서를 안내면 우리말로 게워내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월급에서 차감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부처장: 새로 지급을 할 때에는 동의서를 받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상노)

위 원 : 제가 노동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한테 실제로 여쭙았는데 그분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셨고요. 거기서 어떻게 자문을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재)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런 미 환수금액을 해결하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굉장히도 전적이고 교수의 심정을 상할 수 있는 이런 서약서를 쓰는 것 말고도 가능할텐데 그런 방안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수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이러한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논문을 제출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은 연구기반조성비에 해당 될 텐데 이것을 굳이 논문으로 한정하지 말아야지 만다면 예를 들어서 실패한 연구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연구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로 대체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 제출까지가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비면 1년 또는 2년인데 사실은 논문을 자기 제안대로 실험을 하고 논문을 퍼블리쉬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는 2년 가지고도 굉장히 빠듯한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적정한 사유를 내서 이런 것들 연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준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미 제출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예를 들어서 추후 연구비 신청에 대한 것으로 한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니까 동종의 타이틀에 대해서만 제한적이어야 되지 제한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제한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제한이 한정적이어야만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윤리 위반 같은 경우에 3년 또는 5년에 대해서 다시 그 연구를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보통 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신청했을 때 받는 규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연구기반조성비에 대해서 문제는요. 사실은 연구기반조성비가 논문을 많이 쓰자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의 취지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아예 처음의 계획서를 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내면 150만원 받고 후에 논문을 제출하고 그 차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논문을 쓰고 첫 번째 제출하는 논문에 대해서 연구기반조성비에 해당되는 액수를 준다면 연구기반조성비의 취지를 살려서 다르게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 할 수 있거든요.

위 원 :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에서 자기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 (이인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데 굳이 교육부에서 내려 받은 지침을 그대로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것을 수용해야 되느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의 중요한 구성원이 교수인데 이 교수님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실은 우리가 이런류의 급여를 공제하겠다는 류의 동의서는 어떤 연구비에서도 없습니다. 이런 동의서가 연구비에서 없거든요. 더 많은 몇 억짜리 연구를 수주해도 이런 동의서를 쓰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연구비가 연구비도 아니면서 연구비보다 더 많은 재제를 당한다는 것이 이게 어떤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도 있고요, 부동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윤영상) 지침이 왔다고 해서 비판 없이 그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판적으로 봤고요. 저번에 올렸을 때 재정위원회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항목을 빼서 교육부와 협의를 한 결과 다시 강력하게 동의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와서 다시 올린 거고요. 그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은 사실은 개별 연구관련 사업의 반복을 수정해서 산출하는 문제고 이 교연비라는 큰 문제하고는 좀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연구기간 연장이라든지 성실실패에 대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각 연구지원 사업별로 반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반납동의서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 법률지원팀 변호사에게 직접 검토를 받은 겁니다. 판례에 다 검토가 되어있고 자유로운 의지에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급여의 2분의 1이상은 초과하면 안 된다. 이게 그전에 사례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반영하는데 또 하나의 우려는 계속 결정이 안 되면 계속 협의 중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연비 지급이 계속 지연되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 의견은 일단 통과를 시켜서 교연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 원 : 저 머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교연비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한 18분 정도 (송완상)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은 몇 분정도나 되시나요?

기획예산부처장: 저희가 12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상노)

위 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원 연구비 같은 경우는 학생지도 트랙에서도 학 (송완상) 술트랙과 일반트랙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행 해야 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나머지 1200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부처장: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계속 협의 상태로 미루어집니다.

(이상노)

위 원 : 협의 상태로 대기면 다음 후에 라든지 계속해서 지연된다는 말씀이시죠?

(송완상)

기획예산부처장: 네 그렇죠. 지연됩니다.

(이상노)

위 원 :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송완상)

기획예산부처장: 지급규정은 기획처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상노)

위 원 : 위원회 있습니다.

(윤영상)

위 원 :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재정위원회에서 시
(송완상) 간을 지연하고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재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
금 불필요한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판단해서 결정해주시기 바
랍니다.

위 원 : 해당 위원회에서는 그때도 우려가 있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윤영상) 해서 통과돼서 재정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위 원 : 근데 아까 분명히 해야 되는 문제네요. 우리가 1억과 2억의 문제가 있는데
(이인재) 사실 교연비를 하고서 일반트랙이 있기 때문에 교연비를 신청을 하면서 못
받는 분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아까 1억인 경우에는 선
택영역 그러니까 기반조성비인대요. 이게 몇 년에 걸친 미제출 건인지는 모
르겠으나 그 다음에는 파견 교수님들 경우에 결과물을 제출하지 하지 않으
신 분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다수 분들이 받는 교연비에서는 우리
학교는 교육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 국장님 혹시 저는 행정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부서간에 의견이 다른 경
(양규혁) 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그냥 무조건 상명하복인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동의서를 받기로 했으면 다른 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간까지 연구비
논문 제출 못하면 월급에서 떼버리면 다른 규정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중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한 번 조정을 해서 협의해
서 결정 할 만한대요.

위 원 : 어디하고 어디하고 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수)

위 원 : 교육부하고 대학하고요.

(양규혁)

위 원 :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서 자기들 정책을 한다고 주장을 하겠죠.

(박성수)

위 원 : 이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교수들 모럴해저드가 있는 것
(양규혁) 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 정도가 받고 연구결과를 안냈으니까 근데 그걸 규제
하는데 규제가 제 생각에는 저도 동의서를 본인이 쓴 경우에 그 경우에 법
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급여 차압이 가능할겁니다. 동의서만 받고 재무과가서
차압해달라고 하면 이걸 할 수 없죠.

위 원 : 저희 부서에서 판례 인용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근
(박성수) 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위 원 : 객관적인 근거라는게 자필서명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연구비 신청할
(박성수) 때 동의서를 내는 게 강요에 의한거냐라는게 재판에서 쟁점이 되겠죠.

위 원 : 그러니까 건건히 재판을 해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아야 차압이 될 거라는 얘기죠?
(양규혁)

위 원 : 소송하시면 그럴 수 있지만 자필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
(박성수) 다.

위 원 : 만약에 이런 동의서를 안주면 연구비 지급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자유
(이인재)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위 원 :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해드립니다.

(박성수)

위 원 : 아니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노동법 전공하시는 교수님의 말씀이시
(이인재) 거든요.

위 원 : 그니까 연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반납동의서에 작성에 동
(박성수)의 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자필서명이 되겠죠. 이게 결국은 강요냐 내가 안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될게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 경
중을 따질 수는 있겠죠? 이 사안을 떠나서 이런 의사표현에 있어서 신청을
안 할 자유, 할 자유가 있다고 본다면 신청 안하고 하고는 선택 영역이 되고
그 선택의 대상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인가를 따져 보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걸 쓰지를 않으면은 진짜 세끼가 힘들다 했을 때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환수죠. 그러나 이 경우가 과연 그 정
도의 강요, 대학본부가 이런 규정을 두는 게 강요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겠
죠? 교수님들이 나 싫으니까 그럼 신청안하겠다 라는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면 강요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그것을 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요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위 원 :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이것을 서명안하고 신청 할
(이인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강요가 되는 것이
죠.

위원장 : 저도 사실은 물어봤는데 본인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양규혁) 하기위해서 동의를 한거면 가능한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
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동의서를 하기로 했으면 다른 규제들은 없
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겹으로 규제를 하는게 되버려서 교육부 공문을 제
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걸 또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는 어떻게 우리가 기
본적으로 행정은 효율적이고 규제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 겹겹으로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부처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교육부 담당관하고 통화한 지원분을 초청해서 의견을
(이상노) 들어보면 안 될까요?

위원장 : 네 괜찮습니다.

(양규혁)

재무과장 : 참고적으로 저희가 2015년에 감사를 받았을 때 환수가 10억을 했거든요? 그
(박성일) 런데 제일 문제된 것이 머냐면 환수를 안 하게 되면 교육부 감사 결과 조치
로 정원감축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때도 설득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 3년 동안 감사를 계속
했거든요.

위 원 : 혹시 반납규정은 현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신청할 때 이 규정
(이동현) 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것을 사인하도록 되어있어요. 근데 결함이 없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던 거하고 지금하고 바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부처장 : 바뀐게 동의서 제출입니다.

(이상노)

위 원 : 아니 이미 그 동의서라는게 그 규정이 있고 규정대로 내가 연구를 승인하겠
(이동현) 다고 하는 거에 이미 동의가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부처장 : 성실하게 수행을 하겠다는 것은 있는데 급여에서 차감을 하겠다는 내용은

(이상노) 없습니다.

위 원 : 아니 반납규정도 있잖아요?

(이동현)

기획예산부처장 : 반납은 있는데요. 어떻게 반납을 하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노)

위 원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참 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중으
(윤영상) 로 삼중으로 이렇게 했나 봤더니 동의서 제출이 이미 다 되어있어요. 제출해
야 되고 반납해야 되고 머 이런 것이 이미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또 동
일한 일들을 하나 했더니 다 규정화 되어있는데 그래도 안내고 실적도 안내
고 했을 때 강제 수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들어간 겁니
다.

위 원 : 근데 강제수단은 있죠. 연구비인 경우에 우리도 성실의무 사인을 하잖아요?
(이인재) 근데 만약 연구비에서 부정이 발견이 되거나 하면 환수를 하게 되는데 그건
재판을 통해서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권익
이 보장되는거 아닌가요?

위 원 : 미제출 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홍철운)

위 원 : 대부분이 해당 안 될 것은 압니다.

(이인재)

위 원 : 제가 봤을 때는 연구비를 받았으면 그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홍철운) 아닌가요? 근데 자발적인 협조도 없는 상황에서는 강제적인 조항이 필요하
다고 저는 봐요.

위 원 : 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에 동의서를 쓰고 연
(이인재) 구비를 받는 데가 없어요. 연구비를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연구
비도 아닌 연구비잖아요?

위 원 : 환수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되요. 교수님들에 대한 자발성이
(홍철운) 나 그러한 것들을 존중한다면 자발적으로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미제
출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죠.

위 원 :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항상 법에 노예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별로 기
(홍철운) 분은 좋지 않은데 이 19명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손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 저기요, 직원이 왔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하시죠.

(양규혁)

기획예산부처장: 교육부에서 어떠한 통화를 하셨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노)

행정주사 : 제가 교육부하고 통화를 했고요. 담당 공무원 말로는 이번 교육부에서 온 공
(김 용) 문자체에서 행정상에 연계를 시킨다는 2020년 교연비 승인하고 연계를 시킨
다고 들어서 이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원 :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유희철)

행정주사 : 공문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 용)

위원장 : 그럼 전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엄격하게 집행을 하면 교수들이
(양규혁)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괜히 교수들 건드리기 싫으니까 그냥 엄격하
게 집행을 하지 않고 자꾸 규정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제 생각
이 엄격하게 집행을 하더라도 현행 규정 가지고는 반납 받을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인건가요?

행정주사 : 연구지원부에서 작년 12월에 파악을 했는데 연구기반조성비가 14분정도 안
(김 용) 내시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는 2013년에 연구기간이 있던 분들도 15년 이전
기간이 6분정도 계시고요. 그 이후로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인문사회분야
국제저명학술연구비가 4분, 신입교수 연구비도 3분계십니다.

위원장 : 그분들한테 반납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되고 급여에서 떼는 방법밖에 없
(양규혁) 다는 거죠?

위 원 : 그게 맞는 방법 아닌가요? 왜 1%도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99% 이상이 적
(이인재) 용을 받아야 되죠? 이게 돈을 얼마나 받느냐도 중요하지만요. 돈을 어떻게
받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습
니다.

위 원 : 나머지 99%이상 분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홍철운)

위 원 : 네 압니다. 알면서도 반대하는 겁니다.

(이인재)

위 원 : 원래 이런 강제조항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자발성을 유도하는 의외의 방
(홍철운)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유를 없앤다고 구속한다
고 하지만 이러한 구속력이 자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지금 규정을 타 국립대학은 이 동의서를 다 받아서 교연비 집행이 시행되고
(유희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대학하고 똑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부처장: 부산대는 이미 반영했고요. 충남대, 충북대 등은 부산대 참조해서 변경하고
(이상노) 있습니다.

위원장 : 기한을 봤을 때 5월초부터 말하자면 계획서 내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막바
(양규혁) 지 인 것 같은데 사실 거의 다 논의는 나온 것 같습니다. 서로 다 타당성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더 혹시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 네

위원장 :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분
(양규혁) 이 거수하셨습니다. 반대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의해 찬성9표, 반대1표, 기권1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 기타 안건이 있는데 기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양규혁)

위 원 : 저희가 별첨자료로 드린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박성수) 개정검토(안)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재정운영에 관한 규정 중에 지금 파란색으로 된 안 제7조의2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이 통째로 없습니다. 지금 회의소집이라든가 의결정족수가 법령 시행규칙 제8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의2의 1항, 2항, 4항은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위원회 자체의 운영 규정에 반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반영을 안하다하더라도 효력은 있는데 당연히 반영을 하는게 맞고요. 이번에 추가된 3항 위원장은 회계 세출안 다음연도 세출안에 대해서 재정위원회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차년도 예산은 정기회로 개최합니다. 그니까 40일전까지 내도록 되어있고 집행부에서는 40일전까지 제출하면 위원회가 10일 이내에 열리도록 하는 명시규정입니다. 이것을 정기회로 하고 회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한 번에 심의할 건지 일주일 여유를 두고 각 부별로 심의할건지 이것은 지난번에 열어본 조항이것은 5항 회의소집 7일까지 공모하고 그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6항 주의규정입니다. 자료를 제공 받은 경우에 위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7항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의결 관련 내용을 질의하거나 자료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 위원에 위원활동을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다음 8항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제출에 불응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사항이나 기타 우리가 감사라든가 인사라든가 공개에 부적합한 사항이라고 총장이 인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서조항을 유보조항으로 달았습니다. 12조 대학회계직원의 운용관련 조항인대요. 지금 1항을 보시면 대학회계직원 정원 및 보수는 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실제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하고 있는 업무를 근거조항으로 만들어서

대학회계직원 정원·보수에 관한 재정위원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2항 대학회계직원이 임용, 직종, 직렬,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에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모범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명시하는 겁니다. 3항은 기존에 있는 조항에 파란부분만 근로기준법 부분을 보완한 겁니다. 성별, 국적, 신앙, 채용형태 등의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를 좀 더 강화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 사항 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회계연도 제1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은 김종기, 이문선, 이원석 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운영상, 김종기, 송완상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으로 김종기 위원님, 송완상 위원님, 운영상 위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 사 :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욱)

작성일 : 2020. 5. 7.(목)

위원장 :

양 규 혁

간 사 :

김 강 욱

기록자 :

김 선 응